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용지 용도해제시 주민과 교육감등 의견 청취〉
■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19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

3. 회부연월일 : 2024. 8.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치·이전 등에 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 ----- ----- ----- ----- ----- ----- ----- ----- ----- -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재 학교용지의 용도 지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그 관리 및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²⁾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개정안은 최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특별시장)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사례에서⁴⁾, 학교의 설치·이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육감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견청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1) 학교용지의 지정, 관리 및 해제 절차를 살펴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을 승인 할 때, 교육환경 평가를 거쳐 학교용지가 지정됨.

학교용지가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관리하며,

같은 법 제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음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3) 이는 2020년 신설된 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문제로 초래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시·도교육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행정부의 중재로 체결된 「전국 시·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약」 제7조의 내용을 반영한 규정임.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됨)하였음.

참고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에게 학교용지 지정 해제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용지 용도 해제여부 결정시 주민과 교육감 등의 의견 청취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⁵⁾.

다만,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교육감등의 의견 청취보다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용지의 용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또한, 관할 교육장은 권한의 위임 규정⁷⁾을 고려할 때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교육부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과 교육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다만,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외 다른 용도로 변경

5)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4조(해제신청 절차)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받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등에게 학교용지 지정 해제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교육감 등은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 등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당초 제8조의2 개정안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7) 제9조(권한의 위임)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려는 경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장기 미사용뿐 아니
라 단기 미사용 학교용지 및 용도 변경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시도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